



남양주시 옴부즈만 BI(Brand Identity)

- 모티브 : 돋보기
-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발 간 사

2020년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하며

2020년 12월 2기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출범 이후 대표옴부즈만으로 선발되어 남양주 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에 작게나마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더 없이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행정권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통제기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남양주시 시민의 권익향상 및 행정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가 발 빠르게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들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난 한 해 옴부즈만 제도 존재 목적 아래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 과정에서 행정권 남용 혹은 부당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현장조사와 대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아쉬웠으며, 옴부즈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점, 또한 보다 많은 수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남양주시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발전하는 변혁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고충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 옴부즈만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옴부즈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2기 옴부즈만 위원들과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광한 시장님 이하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남양주시 대표옴부즈만 김효경

「남양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에는 지난 1년 동안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운영성과와 고충민원 처리결과 등을 담아 남양주시 및 시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I .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1. 도입배경	11
2. 운영근거	12
3. 추진경과	12
4. 남양주시 옴부즈만 소개	13
5.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14
6. 고충민원 처리절차	16
7. 옴부즈만 vs 행정심판 · 행정소송	17

II . 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22
2. 옴부즈만 활동현황	24
3. 옴부즈만 제도홍보	30

Ⅲ.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구내식당 위탁업체 조리원 인건비 청구 37
2.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 44
3.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51
4.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요구 60

Ⅳ. 관련 규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0
2.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3
3.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94
4. 남양주시 옴부즈만 운영세칙 102
3.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처분에 관한 규정 110



I.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1. 도입배경
2. 운영근거
3. 추진경과
4. 남양주시 옴부즈만 소개
5.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6. 고충민원 처리절차
7. 옴부즈만 vs 행정심판 · 행정소송

I.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 *umbuðsman*으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 · 대표자 · 변호인 · 후견인'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뜻합니다.

1. 도입배경

가.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핀란드 · 프랑스 · 영국 · 호주 등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고충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조사 · 처리하기 위해 1994.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8.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자율적 · 자주적 해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통해 옴부즈만의 제도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로써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에서는 위법 ·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15. 9. 30.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12. 29. 5인의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추진경과

- 2015. 9. 30. :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015. 10. 30. :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계획 수립
- 2015. 12. 23. :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에 따른 의회동의
- 2015. 12. 29. : 제1기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 2016. 1. 25. : 제1회 남양주시 옴부즈만 정례회 개최
- 2016. 5. 23. : 「남양주시 옴부즈만 운영세칙」 제정
- 2017. 3. 8. : 2016년도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시장, 시의회)
- 2018. 2. : 2017년도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시장, 시의회)
- 2019. 2. : 2018년도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시장, 시의회)
- 2019. 7. 25. :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9. 11. 28. : 「남양주시 옴부즈만 운영세칙」 개정
- 2019. 12. 29. : 제2기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 2020. 2. : 2019년도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시장, 시의회)

4. 남양주시 옴부즈만 소개

- 옴부즈만 임기 : 2019. 12. 29. ~ 2023. 12. 28.

옴부즈만	주요경력
 김효경 대표 옴부즈만	- 변호사 현) 법무법인 다운(구리) 대표 전) 구리 법률사무소 2011.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김유현 부대표 옴부즈만	- 변호사 현) 지함 법률사무소 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2016. 변호사 자격 취득
 김수영 옴부즈만	- 토목 기술사 현) 한국시험공사 원장 현)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김준석 옴부즈만	- 변호사 현) 김준석 법률사무소 대표 현)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2013. 변호사 자격 취득
 김태훈 옴부즈만	- 건축사 현) AIM 건축설계실 대표 전) 예원, 우인 건축설계실 이사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5.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운영

- 인 원 : 5명 (시의회 동의 후 시장이 위촉)
- 임 기 : 4년 (단임)
- 신 분 : 비상임 명예직
- 운 영 : 월 1회 정례회의 (매월 넷째 월요일 16시), 필요시 수시회의
월 2회 무료상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14시~16시)
- 처리기간 : 60일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 주요기능

- 권익구제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에 의한 권익침해를 신속·간편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구제
- 갈등해소 : 불합리한 행정처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상호 협의하도록 유도하여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의 갈등 해소
- 민원상담 : 민원처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또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 직무 및 권한

- 남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사의뢰

○ 업무범위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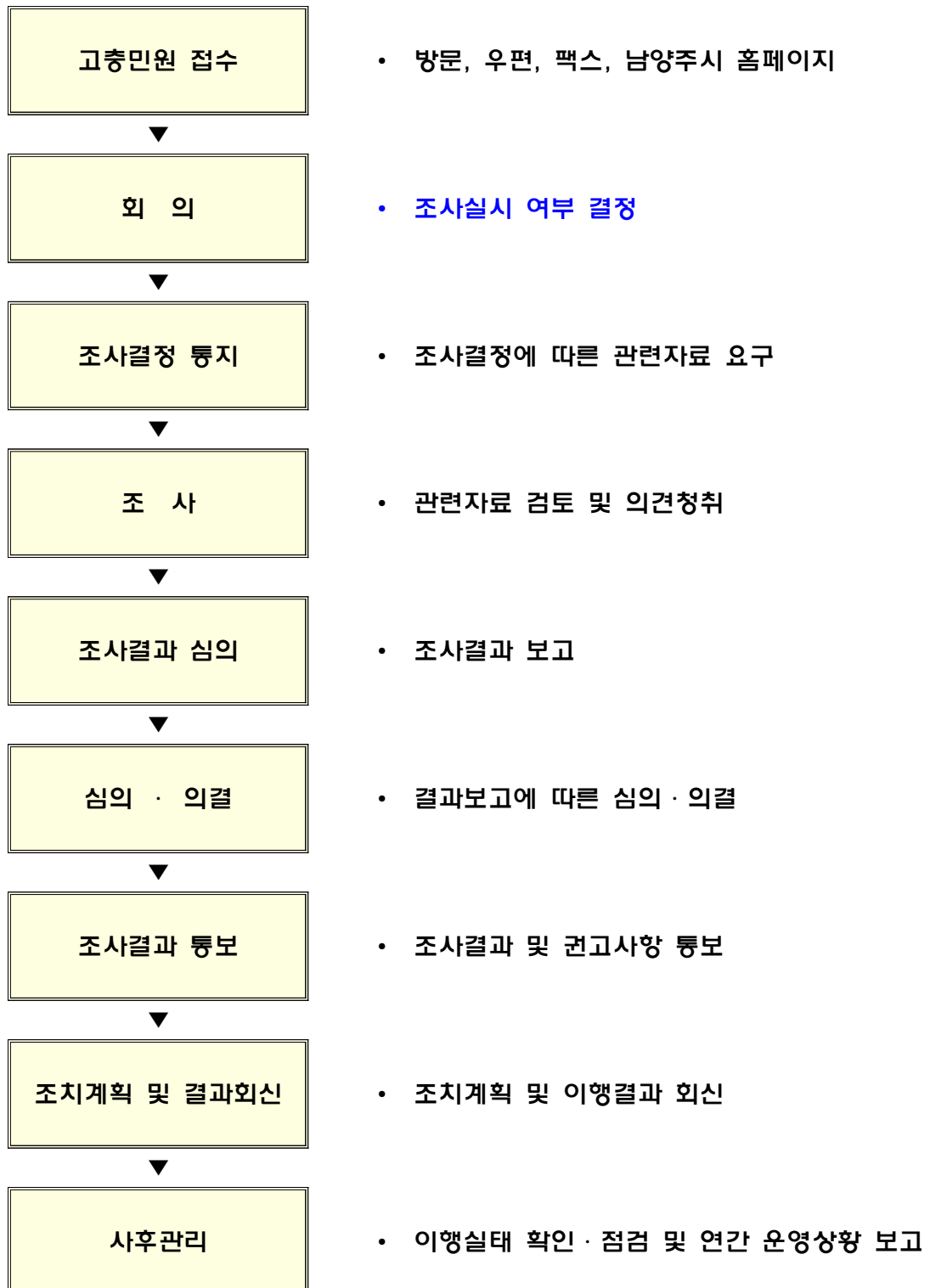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 옴부즈만의 결정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합의권고 :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합의하는 경우
- 조정·중재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 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각 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이 첩 : 다른 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 안 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하는 경우

• 결정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6. 고충민원 처리절차



7. 옴부즈만 VS 행정심판 · 행정소송

구 분	고충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 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불편·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	행정작용에 의해 침해된 경우 권익구제
성 격	비쟁송제도	쟁송제도	쟁송제도
처 리	옴부즈만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기 간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범 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및 불편·부담 등 포괄적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당/부당)	행정의 적법성 유무 (재량권 일탈·남용 포함)
접근성	접근이 용이	보통	매우 어려움
비 용	무료	-	경제적 부담이 높음
구속력	언론공표, 시의회 보고 등 간접적 강제력	기속력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	기관력 (법원, 행정청, 국민에 대한 구속력)
한 계	법적 구속력은 없음 행정처분의 경우 옴부즈만은 재송이 아니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 고충민원을 다룰 경우 심판·소송을 일실할 수 있음	행정기관 자체심사로 일부 중립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될 수 있으며, 처리범위가 제한적	구체적 사건성이 없는 경우 다룰 수 없으며, 재량적 판단에는 부적합 과도한 부담으로 부담



II. 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2. 옴부즈만 활동현황
3. 옴부즈만 제도홍보

II. 옴부즈만 운영성과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1.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가. 접수민원

•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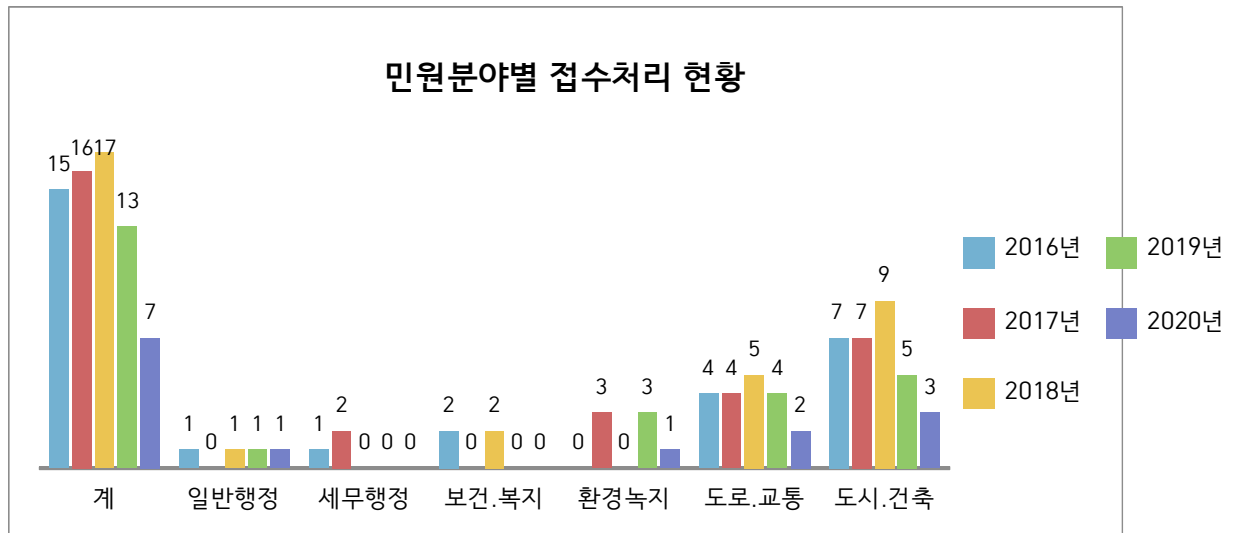
[단위 : 건]

연도	계	옴부즈만 심의					사무국 처리			
		의견 표명	시정 권고	조정 합의	기각	각하	취하	기각	각하	이송
총 계	68	19	5	1	7	1	3	2	14	16
2016년	15	6	—	—	2	—	—	2	3	2
2017년	16	3	2	—	1	—	1	—	8	1
2018년	17	4	1	1	1	1	1	—	3	5
2019년	13	5	1	—	—	—	1	—	—	6
2020년	7	1	1	—	3	—	—	—	—	2

• 민원분야

[단위 : 건]

연도	계	일반행정	세무행정	보건복지	환경녹지	도로·교통	도시건축
총 계	68	4	3	4	7	19	31
2016년	15	1	1	2	—	4	7
2017년	16	—	2	—	3	4	7
2018년	17	1	—	2	—	5	9
2019년	13	1	—	—	3	4	5
2020년	7	1	—	—	1	2	3



• 의견표명 및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수용	불수용	진행
총 계	25	24	—	1
2016년	6	6	—	—
2017년	5	5	—	—
2018년	6	6	—	—
2019년	6	6	—	—
2020년	2	1	—	1

나. 상담민원

• 접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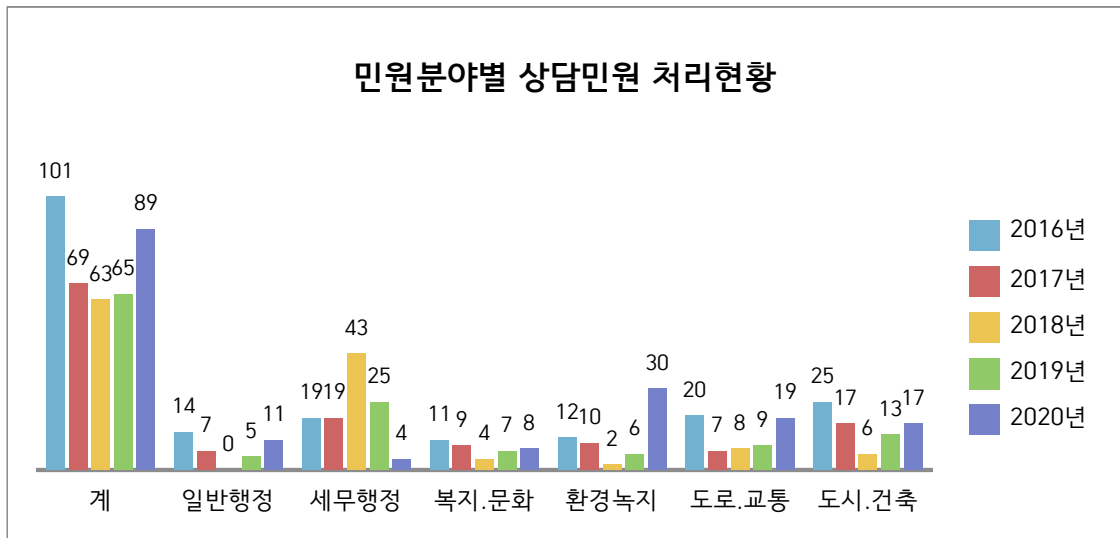
[단위 : 건]

연 도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옴부즈만	사무국	
총 계	387	2	24	361
2016년	101	1	5	95
2017년	69	—	7	62
2018년	63	1	3	59
2019년	65	—	3	62
2020년	89	—	6	83

• 민원분야

[단위 : 건]

연 도	계	일반행정	세무행정	복지·문화	환경녹지	도로·교통	도시·건축
총 계	387	37	110	39	60	63	78
2016년	101	14	19	11	12	20	25
2017년	69	7	19	9	10	7	17
2018년	63	0	43	4	2	8	6
2019년	65	5	25	7	6	9	13
2020년	89	11	4	8	30	19	17



2. 옴부즈만 활동현황

[단위 : 건]

연 도	회의소집			현장점검			감사의뢰
	계	정례회의	수시회의	계	옴부즈만	사무국	
총 계	50	49	1	21	8	13	3
2016년	12	11	1	6	2	4	3
2017년	11	11	—	5	2	3	—
2018년	11	11	—	5	2	3	—
2019년	11	11	—	2	1	1	—
2020년	5	5	—	3	1	2	—

가. 민원처리 사례

연번	민원 및 직권조사 요지	처리결과 및 내용
1	●●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 중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조리원 인건비 청구	· 시정권고 · 구내식당 위탁업체는 기존에 고용한 조리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조리원을 고용해 구내식당을 문제없이 운영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는 구내식당의 위탁자로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위탁업체에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은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2	① ■■■읍 □□□리 등산로는 기부채납의 목적과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기에, 당초 승인조건에 맞도록 기존등산로 대체를 위해 아스팔트 포장도로 개설을 요구 ② 아스팔트로 포장이 불가능하다면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요청 또는 일부 면적에 대해 등산로 및 자동차 진출입을 위해 사용수익허가를 요구	· 의견표명 · 해당 등산로와 인접한 ◇◇아파트 사용승인 시 ‘주민이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오로지 산책로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등산로의 역할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통행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에게 등산로를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일부에 한하여 용도폐지 할 것을 의견표명
3	거주하던 주거지가 수용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여분의 토지에 이축허가를 받은 바, 기 허가받은 건축허가의 용도변경을 요구	· 기각 ·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각

연번	민원 및 직권조사 요지	처리결과 및 내용
4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생략한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와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	· 기각 · 무단 증축한 부분(약 260제곱미터)에 대해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최초 건축허가승인 및 건축허가변경승인과 관련해서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건축물을 철거할 정도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5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건축예정부지의 진입도로 확보 요청	· 기각 · 건축예정부지 진입부는 통행이 가능하고,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허가 당시 협의조건을 준수한다면, ◆◆동 산 37-66번지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6	○○읍 ●●리 주변에 가로등이 부족하니 설치 요청	· 이송이첩 · 옴부즈만 조례 제19조(고충민원의 이첩)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인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이첩
7	□□동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CCTV 설치 요청	· 이송이첩 · 옴부즈만 조례 제19조(고충민원의 이첩)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인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이첩

나. 활동 사진



옴부즈만 위촉장 수여식 1



옴부즈만 위촉식 수여식 2



옴부즈만 정례회(구내식당 인건비 지급)



옴부즈만 정례회(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



옴부즈만 정례회(건축허가 직권취소 및 건물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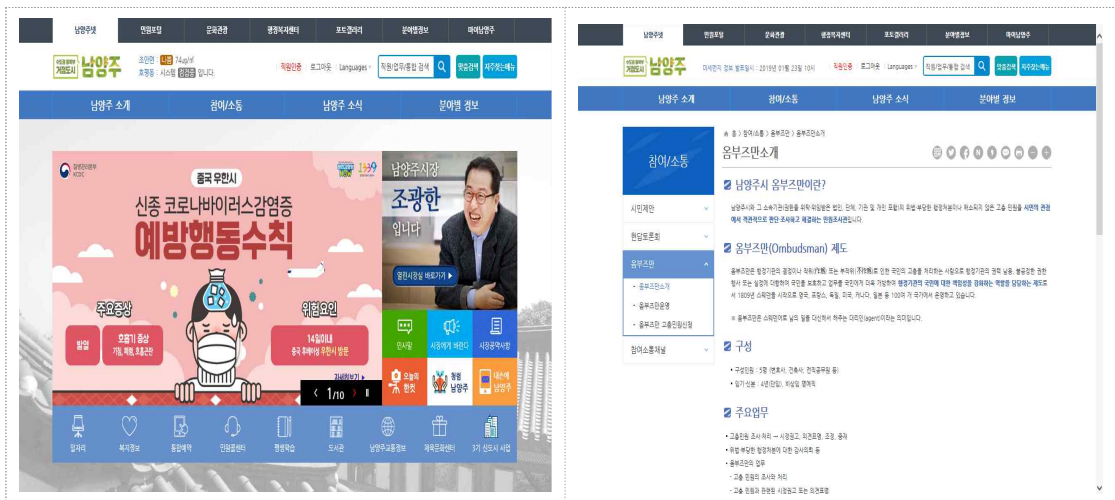


현장실사(등산로 용도폐지)

3. 남양주시 옴부즈만 제도홍보

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창구

- 주 소 : 남양주시 홈페이지 (www.nyj.go.kr) > 참여/소통 > 옴부즈만
- 내 용 : 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 운영, 고충민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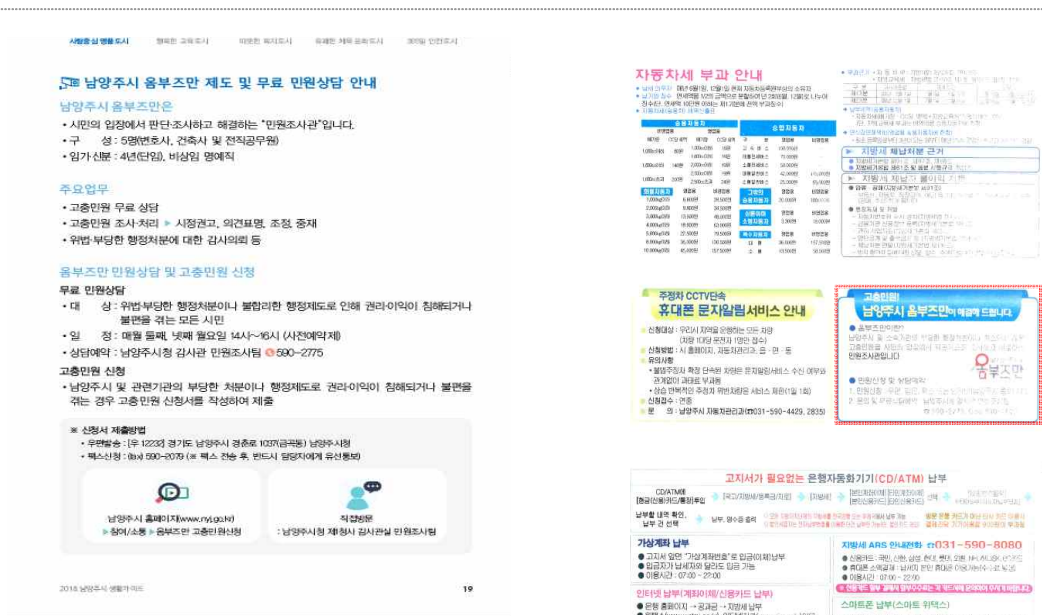
나. 남양주시 홈페이지, 버스정류소 및 전광판 홍보

- 남양주시 홈페이지 홍보배너 표출
- 버스정류소 및 전광판 홍보이미지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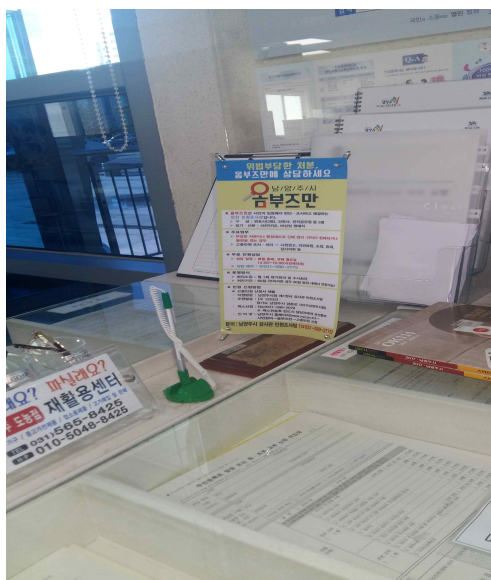


다. 각종 홍보자료 배포·게시

- 생활정보 가이드, 각종 고지서
- 리플렛, 배너



【생활정보가이드 및 고지서】



【배너】

남양주시 읍부즈만 이용안내 □ 읍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조사와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 구 성 : 변호사(3명), 건축사, 전직공무원 등 5명 - 임기·신분 : 4년(단임), 비상임 명예직 □ 주요업무 - 고충민원 조사·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 ※ 업무범위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충민원 신청일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등 ☞ 답변을 원하는 불편한 사항이나 진정질의 등은 "전자(일반)민원장구"를 즉시처리를 요구하는 생활불편사항은 "8272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고충민원 신청서 제출 - 직접방문 : 남양주시청 제1층서 강사관 민원조사팀 - 우편발송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남양주시청) - 팩스신청 : (fax) 031-590-2079 ※ 팩스접수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우선통보 - 인터넷 :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 시민참여 > 읍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남양주시 읍부즈만, 무료상담서비스 운영 ☞ 고충민원 남양주시 읍부즈만과 상의하세요 - 읍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하여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 남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 누구나 읍부즈만에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업무 -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 - 고충민원 조사·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및 제도개선 권고 등 ■ 운영방법 - 구 성 : 변호사, 건축사 및 전직공무원 등 독립된 지위의 전문가 5명 - 회의소집 : 정기회의(월1회) 및 수시회의 - 무료상담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14:00~16:00 ■ 이용방법 - 고충민원 신청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 상담예약 및 기타문의 : 남양주시청 감사관 민원조사팀 (☎590-2775)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 시민참여 > 읍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남양주시 읍부즈만 제도 운영 안내 ○ 읍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조사와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제도도 남양주시 및 관련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 누구나 고충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읍부즈만 - 구 성 : 5명(변호사, 건축사 및 전직공무원) - 운영방식 : 월1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 - 처리기간 : 60일(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 주요업무 - 고충민원 조사·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 ☞ 답변을 원하는 불편한 사항이나 진정질의 등은 "전자(일반)민원장구"를, 즉시처리를 요구하는 생활불편사항은 "8272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남양주시 읍부즈만 운영 ⑤ 읍부즈만이란? 읍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하여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⑥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변호사, 건축사, 전직공무원 등 독립적 지위의 전문가 5명 - 고충민원 : 정기회의(월1회) 및 수시회의 소집 - 무료상담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14시~16시 ⑦ 주요업무 - 고충민원에 대한 무료상담서비스 - 고충민원 조사·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중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및 제도개선 권고 등

라. 지역인터넷 신문

남양주투데이 >	HOME > 자치행정 남양주시/제2기 남양주시 읍부즈만'위촉 A 장성균 기자 © 승인 2020.01.29 14:52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각 분야의 전문가 5명(변호사 3, 건축사 1, 기술사 1)으로 구성된 제2기 남양주시 읍부즈만을 위촉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읍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종합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해결하는 '고충민원 조사관'으로, 2023년 12월까지 4년의 임기동안 역할을 수행한다. 조관한 시장은 위촉식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각자가 가진 전문 역량을 한데 모아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제도들로 인해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읍부즈만 도움을 받으려면 읍부즈만 사무국(금곡동 본청 별관 3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www.nyj.go.kr)→참여/소통→읍부즈만 고충민원신청,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제1기 읍부즈만이 출범한 뒤 2019년 말까지 총 61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	--



Ⅲ.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구내식당 위탁업체 조리원 인건비 청구
2.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
3.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권익위 처리사례)
4.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요구(권익위 처리사례)

Ⅲ. 고충민원 처리사례

1. 구내식당 위탁업체 조리원 인건비 청구

○ 민원내용

- 신청인은 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대표로 ○○행정복지센터와 위탁계약(2018. 2. 22. ~ 2019. 2. 21.)을 체결하여 조리원 2명의 대한 인건비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하기로 계약한 바,
- 기존 근무하던 조리원 2명의 근로계약(2018. 1. 2. ~ 2018. 12. 31.)이 만료되어 새로 조리원 2명을 배치해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약 2달간(2019. 1. 1. ~ 2019. 2. 21.)의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조리원 2명의 인건비 지급을 요청

○ 처리결과 : 시정권고

- 조리원 2명은 ○○행정복지센터(이하 갑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2018. 12. 31일을 기점으로 계약 종료되었으나, 새로 고용된 조리원 2명의 사용자는 갑이고, 갑과 위탁운영업체(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 상 갑이 을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갑은 위탁자로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 감독의무가 있으며, 당초 조리원 2명의 계약이 만료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일부터 2019. 2. 21일까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을이 새로운 조리원 2명을 사용하는데 이를 추진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갑은 을에게 조리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의 결 서

의안번호 제2020-1호

민원표시 제2020-2호 ○○읍사무소 구내식당 위탁업체 조리원 인건비 청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남양주시장 (○○읍 ●●●●과장)

주 문 ○○읍장은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인 지음푸드(대표: 전미영)에게 2019. 1. 1. ~ 2019. 2. 21. 기간 동안 근무한 조리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함

신청취지 ○○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2018. 2. 22. ~ 2019. 2. 21.) 중 지급받지 못한 기간(2019. 1. 1. ~ 2019. 2. 21.) 동안 조리원 2명의 인건비 청구

이 유 별지와 같다.

2020. 6. 10.

대표옴부즈만 김 효 경



옴부즈만 김 유 현



옴부즈만 김 수 영



옴부즈만 김 준 석



옴부즈만 김 태 훈



「별지 1」

이 유

1. 신청인 주장 등

- 신청인은 ○○읍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대표로 ○○읍장과 위탁계약(2018. 2. 22. ~ 2019. 2. 21.)을 체결하여 조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읍장이 지원하기로 계약한 바,
- 기존에 근무하던 조리원 2명의 근로계약(2018. 1. 2. ~ 2018. 12. 31.)이 만료되어 새로 조리원 2명을 배치해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약 2달간 (2019. 1. 1. ~ 2019. 2. 21.)의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조리원 2명의 인건비 지급을 요청함

2. 피신청인(○○읍 ●●●●과장)의 주장

- ○○읍장과 위탁업체의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읍장은 위탁업체에 조리원 2명의 인건비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6조 제2항에는 조리원 2명이 ○○읍장의 소속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조리원 2명은 ‘기간제(단시간)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된 ○○읍 소속의 근로자로 2018. 12. 31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였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간(2019. 1. 1. ~ 2019. 2. 21.)에 새로 고용한 조리원 2명은 ○○읍 소속의 근로자가 아님
- 또한 위탁계약 제6조의 제1항에 의거하여 위탁업체는 사업장에 종업원 배치 시 ○○읍장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리원을 채용 및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채용한 조리원 수와 근무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 없이 위탁업체의 말만으로 일방적 수용은 불가함

3. 판단부분

가. ◎◎읍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위탁업체(이하 ‘을’ 이라 한다.) 및 조리원 사이에 계약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 1)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이하 ‘위탁운영 계약서’ 라고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제3조(위탁운영 범위)에서 “갑” 은 “을” 에게 2018. 2. 22일부터 2019. 2. 21일까지 조리원 2명의 인건비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종업원 관리) 제2항에서 조리원 2명은 “갑” 의 소속으로 “을” 은 조리원 2명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2) 또한 이와 별개로 “갑” 은 조리원 2명과 2018. 1. 2일부터 2018. 12. 31일까지 「기간제(단시간) 근로계약」 (이하 ‘근로계약’ 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조리원 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3) 이처럼 “갑” 은 “을” 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계약하면서, 조리원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계약이 개별적으로 유효하나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어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의 두 건의 계약을 정리해보면 조리원 2명은 “갑” 에게 소속되어 2018. 12. 31일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퇴사처리 이후

에도 새로운 조리원 2명의 사용자는 “갑” 이었고, “갑” 과 “을” 사이에 체결한 ‘위탁운영 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제3조(위탁운영범위) 등에 의거하여 “갑” 은 여전히 “을” 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 없이 조리원을 배치한 “을” 의 책임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 1) ‘위탁운영 계약서’ 제6조(종업원 관리) 제1항에 “을” 은 “갑” 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배치 시 “갑” 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신원을 보증하고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을” 이 별도의 협의 없이 조리원을 채용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그러나 “을” 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갑” 역시 구내식당의 위탁자로서 운영에 대해 감독의무가 있으며 조리원 2명의 계약이 만료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일부터 2019. 2. 21일까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을” 이 새로운 조리원 2명을 사용하는데 이를 추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 더욱이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2명의 조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던 “갑” 입장에서는 위 조리원 2명의 채용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인건비 지급의무가 유효하여, 지급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 “갑” 이 조리원 2명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미

“을” 이 인건비를 지급하여, 조리원 2명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권 청구 등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서라도 “을” 에게 직접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 본 입 니 다

2020. 6. 10.

남 양 주 시 읍 부



2.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

○ 민원내용

- 신청인의 토지(□□□리 430-1 외 1필지)는 등산로(산책로)와 접해있었으나, 2009년 ◇◇◇◇◇아파트 건설로 도로가 단절되어 현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함
- 시공사가 기부채납한 □□□리 598-11번지(소로 ◆-◆◆호선)를 현재 등산로(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음
-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로 인정받고 있지 못함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대체 등산로를 이용하여 본인 토지와 연결하는 도로개설 혹은 공유재산(□□□리 430-15)의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를 요청

○ 처리결과 : 의견표명

- 해당 등산로와 인접한 ◇◇◇◇◇아파트 사용승인 시 ‘주민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는 오로지 산책로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등산로의 역할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통행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에게 등산로를 개방한다는 조건 하에 일부에 한하여 용도폐지 할 것을 의견표명

의 결 서

의안번호 제2020-2호

민원표시 제2020-1호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

신 청 인 ○○○○

피신청인 남양주시장 (◆◆◆◆과장)

주 문 공유재산(□□□리 430-15) 일부에 대하여 용도 폐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본인 소유지(□□□리 430-1, □□□리 산88-1)로의 진출입로를
위한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2020. 9. 4.

대표옴부즈만 김 효 경



옴부즈만 김 유 현



옴부즈만 김 수 영



옴부즈만 김 준 석



옴부즈만 김 태 훈



「별지 1」

이 유

1. 신청인 주장 등

가. 현재 등산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교통영향평가 승인조건 및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의 목적(지역 주민 및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기존 산책로와 소로 ◆-◆◆호선을 연결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과 어긋나기에 당초 승인조건에 맞도록 기존등산로 대체를 위해 아스팔트 포장도로 개설을 요청

나. 기부 채납된 토지(□□□리 430-15 외 1필지)를 본연의 목적(등산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요청 또는 일부 면적에 대해 등산로 및 자동차 진출입을 위해 사용수익허가를 요청

2. 피신청인(◆◆◆◆과)의 주장

가. □□ ◇◇◇◇◇아파트 신축으로 기존 현황도로가 단절되어 신청인 토지로의 진출입 도로가 없어졌기에 당초 기부채납 목적대로 산책로(기존 현황도로와 연결)를 조성함이 타당하나,

나.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따라 행정목적의 상실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공유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침해 소지 등 민원유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가능해야 하는 등산로를 특정 개인의 이익(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불가함

3. 판단

가. ‘지역 주민 및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기존 산책로와 소로 ◆-◆◆호선을 연결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가 단순 산책로로만 이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1) 아파트 사용승인 시 ‘지역 주민 및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기존 산책로와 소로 ◆-◆◆호선을 연결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는 소로 ◆-◆◆호선이 지역주민 및 등산객이 등산 또는 산책함에 있어 소로 ◆-◆◆호선을 이용하여 통행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오로지 산책로로만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더욱이 아파트 사용승인 시 소로 ◆-◆◆호선의 사용형태가 일반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 현황도 충분히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소로 ◆-◆◆호선을 정비한 까닭은 도로의 역할을 겸비한 통행로를 만드는데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등산로(산책로)와 신청인의 주택 진출입로의 공존을 위하여 등산로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리 435-10)의 일부만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2) 신청인의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신청인 개인의 개발을 위한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용수익허가라고 보이지 않는 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리 430-1 외 1필지를 ◇◇◇◇◇아파트 건설 이전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재산의 대하여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 1)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의 기본원칙이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2)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용도폐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 의사의 존재를 알 수 있어야 한다.

- 3) 대법원 1993. 4. 13.자 선고 92누18528 판결에서는 하천부지가 폐천부지가 되었다거나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용도 폐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이 산책로 이용 목적으로 기부 채납되었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 이상 이를 전부 폐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4) 다만 동 사안에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고, 통행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아닌 신청인의 토지 일부를 기존 산책로와 연결하여 주민들에게 등산로(산책로)를 개방한다면, 공유재산 일부에 한하여 용도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에 따라 옴부즈만 각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의결합니다.

정 본 입 니 다

2020. 9. 4.

남 양 주 시 옴 부



3.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국민권익위원회 처리사례)

○ 민원내용

- 신청인은 남양주시 □□동 19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서, 사업주체가 이 민원아파트의 건설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이 아파트의 주 진입로 앞 □□동 삼거리 일대 구간의 기존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이 계획됨에 따라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

○ 처리결과 : 의견표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 점,
- 같은 법 제10조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로서 도로에서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를 포함하고 있는 점,
- 도로교통공단은 이 민원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신설할 경우 어린이 교통 안정성은 크게 저하되고 교통소통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속차로 설치 후 육교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변여건상 신축이 곤란할 경우 이 민원 육교를 존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육교 철거로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하도록 의견표명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1소위41-교01호

민원표시 2BA-1902-382807, 2AA-1910-633308, 2AA-1910-030902, 2AA-1910-393463,

통학로 안전 대책 요구

신 청 인 김■■■■ 외 948명

피신청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의 결 일 2019. 11. 25.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남양주시 ■■■동 삼거리 육교 철거로 인해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역 인근 경기 남양주시 ■■■동 19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 예정자로서, 사업주체(현재 ■■■■■, 이하 '이 민원 사업주체'라 한다)가 이 민원 아파트의 건설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도

로사업(이하 '이 민원 도로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민원 아파트 주 진입로 앞 평내동 삼거리(이하 '이 민원 삼거리'라 한다) 일대 구간의 기존 육교(이하 '이 민원 육교'라 한다)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계획됨에 따라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도로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육교 재설치 등을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 신축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명 : ■■■역 ■■■ 아파트 신축
- 2) 사업주체 : ■■■
- 3) 사업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동 191번지 일원
- 4) 대지 면적 : 37,101m²
- 5) 연면적 : 129,329.48m²
- 6) 규모 : 공동주택 11개동, 지하2층, 지상32층
- 7) 세대수 : 1,008세대
- 8) 준공연도 : 2020년 4월

나. 이 민원 아파트는 2010. 12. 7.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고, 2017. 9. 2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이 민원 사업주체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으며, 2017. 10. 2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되었다.

다. 이 민원 도로사업은 이 민원 아파트의 건설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남양주시 고시 제2018-252호(2018. 6. 7.)로 고시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0. 4. 30.까지이다.

라. 이 민원 도로사업은 이 민원 삼거리 일대 구간(189m)의 도로폭을 기존 양방향 7차로에서 9차로(폭36m)로 확장하고, 이 민원 삼거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민원 육교를 철거하며, 좌회전 및 가속차로 등 2개차로의 추가 및 횡단보도의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다.

마. 이 민원이 접수된 2019. 2. 25. 이전에 이 민원 아파트 입주예정자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육교를 재설치해 달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2018년 11월 신청된 고충민원(2AA-1811-158393, 2AA-1811-235491)에 대하여 2018. 12. 17.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도로사업의 설계변경 및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심의안내) 하였으며,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도로사업으로 기존 육교가 철거되므로 보행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이 민원 사업의 설계를 재변경하여 육교를 재설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향상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관할 기관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그 결정이 심대히 공익을 해한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특정지역의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가 현지 교통상황,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도로사업의 설계변경 및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현지실정,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이 건 민원은 종결하기로 한다.

바.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2019. 2. 25. 이 민원이 다시 접수됨에 따라 수 차례의 위원회 실지조사(2019. 3. 29. 1차, 2019. 5. 3. 2차, 2019. 6. 20. 3차)를 통해 조정 등을 추진하였고 2019. 9. 17. 신청인과 피신청인, 도로교통공단, 남양주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현장방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 회의 이후 2019. 9. 20. 우리 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에 기술검토를 요청하였고, 도로교통공단은 이 민원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신설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성은 크게 저하되고 교통소통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속차로 설치 후 육교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변 여건상 신축이 곤란할 경우 이 민원 육교를 존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2019. 9. 24. 우리 위원회에 기술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

아. 2019. 9. 30.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도로교통공단의 기술검토 결과를 통지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수용·불수용 의견, 사유, 대안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주체는 교통영향평가 재작성 및 심의안전재 작성을 통한 사업승인 조건변경 등은 불가능하다는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사업에 대하여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육교 존치 및 재설치 등을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2019. 10. 24. 우리 위원회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는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

람을 말한다. 2. ~ 3. 생략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 6. 생략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제1항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1. ~ 2. 생략

3. 도로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 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전용주 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 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다. 이 민원 육교 철거에 따라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육교 재설치 등을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 점,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로서 도로에서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③ 도로교통공단은 이 민원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신설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성은 크게 저하되고 교통소통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속차로 설치 후 육교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변 여건상 신축이 곤란할 경우 이 민원 육교를 존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점, ④ 우리 위원회가 2018. 12. 17. 이 민원 도로사업의 설계변경 및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심의안내) 한 바 있으나, 이를 변경할 만한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견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육교 철거로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육교 철거에 따라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1월 25일

위원장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정 본 입 니 다 .

2019. 11. 27.

국 민 권 의 위 원 회



4.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요구(국민권익위원회 처리사례)

○ 민원내용

- 신청인은 남양주시 △△읍 ■■리 산23-51번지의 소유자로서, 자녀 명의로 이 민원 토지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위치한 △△고등학교(이하 ‘이 민원 학교’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및 도시경관 침해 등의 이유로 불가 처분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장 신설 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공장신설 승인을 받고,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민원 학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니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

○ 처리결과 : 시정권고

- 신청인이 공장 건축을 위해 이 민원 학교를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방지 계획을 설명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교에서는 공장이 가동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 그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교육환경의 악화에 대한 우려만으로 비합리적으로 공장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점
- 공장설립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아님에도 공장신설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이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신청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민원 토지에 공장신설승인 받은 내용과 같이 이 민원 공장 신축을 허가하는 것으로 시정 권고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2소위27-기01호

민원표시 2CA-2002-0480116,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요구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경기도 남양주시 ■■■읍장

의 결 일 2020. 7. 20.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산23-5 외 1필지에 신청한 공장 신축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2019. 7. 5.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시정 권고 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건축주의 父)은 경기 남양주시 ■■■읍 ■■■리 산23-51번지와 같은 리 26-23번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토지(임야)의 공유지분 소유자로서, 자녀(건축주 이 ■■■) 명의로 이 민원 토지에 지상1층, 연면적 950㎡의 공장(목제가구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2. 4. 12. 피신청인에게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13. 이 민원 토지 인근에 위치한 ■■■고등학교(이하 '이 민원 학교'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및 도시경관 침해 등의 이유로 불가 처분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4. 1.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장 신설 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裁決)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2016. 9. 2. 공장신설 승인을 받고, 2019. 7. 5. 공장신설승인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20. 1. 6. 이 민원 학교로부터 공장신축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 민원 공장이 운영되더라도 소음진동 등의 규제기준 미만 사업장이고, 이 민원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다고 확인되었음에도 공장신축에 대한 이 민원 학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장 설립승인 조건에 따라 공장 부지조성 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해 이 민원 학교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동의서 제출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기한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반려 처분하였으며, 이 민원 공장 건축에 따른 학교 측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건축허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9. 7. 5. 이 민원 토지 소유자로서, 자녀(이■■■) 명의로 이 민원 토지 위에 기타목제가구제조업(이하 '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규

모로 신축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2019. 7. 5. 신청하였다.

《이 민원 공장 신축 예정 규모》

위치	경기 남양주시 ■■■읍 ■■■리 산23-51외1필지(23-62)				
건축주	용도	대지면적	규모	연면적	접수일
이■■■ (신청인의 자)	공장 (기타목재가구 제조업)	5,900㎡	지상 1층 2개동	950㎡	2019. 07. 05.

나. 피신청인은 2020. 1. 6. 신청인이 ‘공장설립승인(2016. 9. 21.) 조건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해 이 민원 학교 측과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동의서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며 그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이 반려한 사유》

1. 공장설립승인조건에 따라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해 ■■■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측과 사전협의 절차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동의서 제출 및 사업계획서상 회사명 및 대표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여 제출바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분야별 검토사항) 라목 및 마목 규정에 적합하게 재 계획하신 일건 서류 제출바람.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학교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고, 이 민원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약 80m 떨어져 있다.

《이 민원 공장과 이 민원 학교간 이격거리 현황》



라. 피신청인은 2016. 9.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규정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이동석이 이 민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을 승인하였으며, 이때 공장설립승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신청인은 2012. 4. 12. 이 민원 토지에 ‘가구’라는 상호로 기타목재가구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① 「산지관리법」에 따라 신청지 반경 250m 이내에 기 산지전용허가가 되었거나 협의된 산지전용지를 포함하여 허가면적이 30,00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사업입지로 인한 주변경관 및 주변생활환경에 저해가 없어야 하며, ② 이 민원 토지는 「학교보건법」(現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정화구역으로서 형질변경으로 인한 소음, 진동, 대기와 관련한 학교생활 및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의 임야가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③ 신청인의 사적이익을 위한 개발보다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공익기능을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공장설립 승인 요청을 2012. 7. 13. 반려처분 하였다.

- 2) 신청인은 2012. 9. 19. 피신청인에게 상기 공장설립승인 반려 처분에 대해, '① 이 민원 토지(부지면적 10,000㎡ 이상)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② 신청인이 산림청에 이 민원 관련 도면을 송부하여 절의한 결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에 따라 기존허가지 사이에 2차선 도로가 가로 놓여 있으므로 기존 면적을 합산하지 않아 반경 250m 이내에 면적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민원 공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 어느 항목(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이유로 이의제기 하자, 피신청인은 2012. 10. 민원조정 위원회를 개최,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3) 이에 신청인은 2012. 10. 22. 공장설립승인을 재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11. 14. 보완서류 제출 및 처리지연을 통보하고, 보완요청사항 중 이 민원 학교와 관련하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피신청인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공장 착공 이전에 학교와 협의 후 착공을 요청하고 공사시 교통안전과 발생할 수 있는 소음·분진을 고려하여 학교 시험, 공휴일, 방학, 행사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공사하라'는 등의 이 민원 학교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었고, 신청인 또한 '학교 관련 피해예방 조치계획'을 2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3. 8. 13.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라는 이유로 공장신설승인을 불가처분 하였다.
- 4) 신청인은 2013. 11. 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공장신설승인 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 2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등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동력 20마력 이상의 제조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민원 공장은 총 동력 15.5마력

이고,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선거리 80m 떨어져 있어 위 기준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주변이 공장으로 둘러싸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고,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개발행위의 자율성 보다는 면학분위기와 건강한 교육환경조성이 더 크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배출허용기준이나 소음 등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공장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공익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공장신설을 불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민원 공장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공장 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사유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공해방지계획의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심, 재난안전사고 우려, 자연경관, 도시미관, 학습 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상적 사유를 들어 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3. 8. 13. 신청인에 대하여 한 공장신설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裁決)하였다.

- 5) 피신청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14. 1. 22.)에 따라 공장신설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하고, 이 민원 공장 신설승인을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4회[2014. 4. 17.(1차), 2014. 12. 4.(2차) 2015. 6. 18.(3차) 2015. 10. 6.(4차)] 개최하여 조건부 가결(이 민원 학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한 공장건설 관련 민원해소 등)되자, 2015. 10 .14.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이 민원 학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한 공장 건설 관련 민원해소 방안 제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16. 8. 17. “공장신설승인 이후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하겠음”이라는 약속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은 2016. 9. 2. 이 민원 공장의 신설을 승인하면서,“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착공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은 학교 측과 피해방지대책 등을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득한 후 부지조성을 위한 별목 등 토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 중지 및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을 붙였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학교(■■■■고등학교) 부지는 당초 신청인 외 3인 공동소유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해 1999. 4. 22. 이 민원 학교부지로 양도하였으며, 이 민원 공장 건축허가를 위해 이 민원 학교를 수차례 방문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이 민원 학교에서는‘학교 주변 공장 신축으로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학교 주변 녹지 훼손,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공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장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는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학교 측 동의 외에는 보완 내용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니 이 민원 공장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공장 건축허가를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바. 이 민원 관련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은‘이 민원 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 해당 장소 및 해당 시설은‘교육환경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민원 관련 학교장의 의견은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당 사업자가 미리 조치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환경의 변화(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민원 학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건축허가‘조건’으로 인해, 신청인이 학교를 수시 방문 및 학교 내부 의견 차이로 인해 인허가와 같은 행정적 의무사항이 없고 비전문가인 학교의 학사 운영에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생 략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학교보건법」(現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7호, 2016. 3. 2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이 하 중 략 ~~~~~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학교보건법 시행령」(現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3937호, 2016. 3. 2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 8. 1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제5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이 하 생 략 ~~~~~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이 하 생 략 ~~~~~

7) 판례

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

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 대법원 1992. 3. 144. 선고 96누16698 판결

제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두10325 판결

건축허가의 조건인 '민원해소'란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받아 들여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주민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까지 모두 수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학교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민원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음에도 공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 2013. 8. 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통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라는 이유로 이 민원 공장신설승인을 불가 처분한 것에 대해 '소음 등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이 민원 공장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2) 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 건축을 위해 이 민원 학교를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방지

계획(공사 시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발생 등으로 학교 학생들의 학습활동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공사 중지·조치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후 공사 등)을 설명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학교에서는 이 민원 공장이 가동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러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교육환경의 변화(악화)에 대한 우려만으로 비합리적으로 공장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점,

- 3) 신청인이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한 이상 학교 측의 무리한 요구를 해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장설립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아님에도 공장신설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이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신청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 4) 이 민원 공장 신축공사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음, 진동, 먼지 등의 문제는 신청인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이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이를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 5) 법원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 6) 공장설립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때, 이 민원 공장신설 승인 때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같이 제출하였다면 건축허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민원 토지에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이후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공장 운영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건

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민원 토지에 공장신설승인 받은 내용과 같이 이 민원 공장 신축을 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장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20일

위원장 김 태 응

위 원 황 성 주

위 원 김 수 정

정 본 입 니 다 .

2020. 7. 24.

국 민 권 의 위 원 회





IV. 관련규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남양주시 옴부즈만 운영세칙
5.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처분에 관한 규정

IV. 관련규정

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2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9.30 조례 제1291호

(일부개정) 2017.01.25. 조례 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남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남양주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남양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국가옴부즈만”이란 국민권익위원회에 선임되어 있는 옴부즈만을 말한다.
7. “관계행정기관등”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기관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시장 및 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5. 관할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읍 출장소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7. 시장 및 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8. 직권조사 시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9.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10.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1.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구성) ① 읍부즈만은 시장 소속하에 두며, 읍부즈만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② 읍부즈만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읍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읍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읍부즈만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읍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읍부즈만 등) ① 대표읍부즈만은 읍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읍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읍부즈만은 대표 읍부즈만이 임명한다.

③ 대표읍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읍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중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읍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적인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시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2. 인사업무 담당실장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시 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가로 추천하는 경우
-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추천대상 옴부즈만을 결정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옴부즈만 위촉) ① 시장은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명망과 학식 등을 고려하여 의회에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옴부즈만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제15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7조(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ombudsman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ombudsman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은 ombudsman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제17조에 따라 ombudsman과 국가ombudsman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호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ombudsman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20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옴부즈만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옴부즈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이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4조(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6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시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재심의) 시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제34조(국가옴부즈만과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가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옴부즈만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 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가옴부즈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옴부즈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 제35조(사무국)**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 하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6(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옴부즈만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91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09.30 규칙 제667호

(일부개정) 2019.07.25 규칙 제7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운영 및 관리

제2조(옴부즈만 회의 소집) ①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옴부즈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알리기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보고사항) 옴부즈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3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7. 옴부즈만이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 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4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⑤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회의의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옴부즈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결정의 통지)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옴부즈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인과 시 및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 등 시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통지 전에 관계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30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요청받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 및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재심의 대상 : 회의에 부침
2. 재심의 비대상 :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

제11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31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읍부즈만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읍부즈만이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조사

제13조(신청 및 접수) ① 읍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읍부즈만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문서·구술·전화·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신청의 대리 등)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옴부즈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옴부즈만이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를 신청인과 조례 제7조에 따른 관할기관의 관련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기간 연장) 옴부즈만이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하 “옴부즈만등”이라 한다)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옴부즈만등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와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등은 피조사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성년의 여성 임회하에 조사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임회하에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중지 등) ① 옴부즈만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조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4.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 및 관계행정기관등과 신청인에게 조사의 중지 등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제20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합의)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처리한 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수당과 여비)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전 심사,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신분증명서)** ① 남양주시장은 옴부즈만등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남양주시장은 옴부즈만등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의 운영

제25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2.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6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사무국장)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은 남양주시 감사관을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옴부즈만 사무의 전결) 옴부즈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옴부즈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대표옴부즈만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처리 한다.

제29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30조(문서 및 관인)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같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

제31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2조(정보의 보호) 옴부즈만등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만이 정할 수 있다.

4. 운영세칙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운영세칙

(제 정) 2016.05.23.

(일부개정) 2019.11.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근무규정

제2조(기본자세) ① 옴부즈만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신분증 제시) 옴부즈만은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출장) ① 옴부즈만은 출장 중에는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옴부즈만이 관내·관외출장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한다.

제5조(서류보관 등) 읍부즈만의 운영과 관련한 서류는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읍부즈만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의 인계인수는 「남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읍부즈만은 상호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의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제8조(대표읍부즈만 선임기간) 조례 제5조에 따라 호선된 대표 읍부즈만의 선임기간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 및 조사·처리

제9조(고충민원의 상담 및 신청)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 상담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민원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문맹이나 문서 이해능력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다수의 신청인”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의 신청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고충민원상황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고충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고충민원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고충민원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청한 고충민원은 접수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의 보완) 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옴부즈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구술·전화·팩스 등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인의 권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옴부즈만은 민원의 조사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후에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의 취하) ① 옴부즈만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이 고충민원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고충민원을 종결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으로 취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 처리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하여 고충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본을 고충민원기록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14조(처리의 원칙) ① 진행 중인 2 이상의 민원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을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조)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에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안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방침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중지 등) 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옴부즈만에서 각하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2. 옴부즈만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이첩된 경우
3. 신청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4.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의 관한 질의
5.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하고 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옴부즈만은 제2항과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옴부즈만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8조(처리기간의 계산)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조사방법)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는 당사자 주장내용,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 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출석조사) 옴부즈만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21조(실지조사)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거나 현지에서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합의 및 조정) ①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합의에 참여한 옴부즈만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결과 보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완료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결정의 통지 등) ① 조례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및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처리결과 통지는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메일·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5조(재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에서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영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재심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에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대표옴부즈만 결재로 중지·종결 처리한다.

제26조(처리결과 이행실태 사후관리) ① 옴부즈만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통보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사후관리카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매월 처리결과 이행실태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이행촉구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33조제1항에 의거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결과를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및 무료상담

제28조(회의소집) ① 시행규칙 제2조 의거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4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회의개최) ① 고충민원의 조사여부 결정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을 위하여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네번째 월요일에 개최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시회의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필요한 경우 대표옴부즈만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조사여부 결정)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② 고충민원 내용이 제16조 제1항 내지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없이 종결처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1조(조사 읍부즈만의 결정) 조사심의회가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대표읍부즈만은 이를 처리할 조사 읍부즈만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읍부즈만의 소속·성명·연락처를 기재하고 조사실시를 통지해야 한다.

제32조(심의의결)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의결 직후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의결에 참가한 읍부즈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③ 읍부즈만은 심의·의결된 고충민원 결정사항을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④ 읍부즈만은 재심의 사안에 대하여도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의결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무료예약상담서비스 운영) ① 시민들의 편의증진 및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월 2회의 범위 내에서 무료예약상담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과 시간은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표읍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② 무료상담서비스는 상담일 7일전까지 사무국에 예약하여야 하며, 담당 읍부즈만에게 상담일 7일전까지 접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운영지원

제34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개별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사무결재의 기준) 읍부즈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읍부즈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결재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

5. 면책규정

남양주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처분에 관한 규정

(제 정) 2009.04.09 훈령 제242호

(전문개정) 2014.08.21 훈령 제352호

(일부개정) 2018.06.07 훈령 제400호

(일부개정) 2019.06.27 훈령 제415호

(일부개정) 2020.07.16 훈령 제4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 감사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를 받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요건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하였을 경우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남양주시 감사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를 받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6.7.>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6.7.>
3. “불이익한 처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남양주시 감사 규칙」에서 정한 징계, 문책,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8.6.7.>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 등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8.6.7.>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남양주시 감사 규칙」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을 포함한다)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남양주시 감사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된다.
[전문개정 2018.6.7.]

제5조(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6. 27.>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19. 6. 27.>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6. 27.>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 6. 27.>
4. 삭제 <2019. 6. 27.>

③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옴부즈만 권고 및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7. 16.>

④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7. 16.>

[전문개정 2018.6.7.]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면책 여부 심사를 위하여 남양주시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7.>

② 제1항의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8.6.7.>

③ 당연직 위원은 법무, 회계, 인사, 규제개선, 심의안전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2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6.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6.7.>

⑥ 심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심의회가 끝나면 위촉직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7.>

[제목개정 2018.6.7.]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양정을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다만, 소집회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6.7.>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7.>

③ 심의회는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자 및 면책심의대상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7.>

[제목개정 2018.6.7.]

제9조(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7.>

제10조(면책제도 안내) 감사관은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 뒤쪽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7.>

제11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7.>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7.>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사전 컨설팅 감사, 옴부즈만 권고 및 민원법률연구회 자문결과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등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앞쪽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있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7.>

제12조(면책심사 처리) 감사관은 제11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7.>

제13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는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 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7.>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 등의 경고 등 처분 <개정 2018.6.7.>

제15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6.7.>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8.6.7.>

제16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7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
4. 공무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경우 <개정 2018.6.7.>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하여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8.6.7.>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 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8. 그 밖에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8.6.7.>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장(훈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18.6.7.>

제19조(기록유지) 감사부서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남양주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전부개정 2014.08.21. 훈령 제3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8.6.7. 훈령 제40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415호, 2019.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책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면책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훈령 제428호, 2020. 7.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ombudsman 운영상황보고서

| | |
|-----------|---|
| 발 행 처 | 남양주시 ombudsman |
| ombudsman | 대 표 김효경
부대표 김유현
위 원 김수영, 김준석, 김태훈 |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감사관) |
| 전 화 | 031) 590-2775 |
| 팩 스 | 031) 590-2079 |
| 홈페이지 | (남양주시 홈페이지) www.nyj.go.kr
> 참여/소통 > ombudsman |

2021년 2월 발행